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. 8. 31 선고 2019가단15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

변 론 종 결 2021. 8. 10.

판 결 선 고 2021. 8. 3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경남 거창군 D 대 1,625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지상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11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2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1, 12, 7, 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6㎡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, 경남 거창군 D 대 1,625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11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2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1, 12, 7, 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6㎡를 인도하며,

나. 피고 C은 경남 거창군 D 대 1,625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㉠ 내지 ㉡부분 지상 각 건물을 철거하고, 경남 거창군 D 대 1,625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㉠ 내지 ㉡부분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8. 9. 경남 거창군 D 대 2,069㎡에 관하여 2019. 7. 30.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.

나. 2019. 11. 12. 경남 거창군 D 대 2,069㎡로부터 E 대 444㎡가 분할되어 경남 거창군 D 토지의 면적은 1,625㎡이 되었다(이하 분할 후 경남 거창군 D 대 1,625㎡를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.

다.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지상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이고, 그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11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2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1, 12, 7, 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6㎡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.

라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㉠ 내지 ㉡부분 지상에 위치한 각 건물은 피고 C의 소유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B은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지상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11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2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1, 12, 7, 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6㎡를, 피고 C은 별지2 도면 표시 ㉠ 내지 ㉡부분 지상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

토지를 점유, 사용하고 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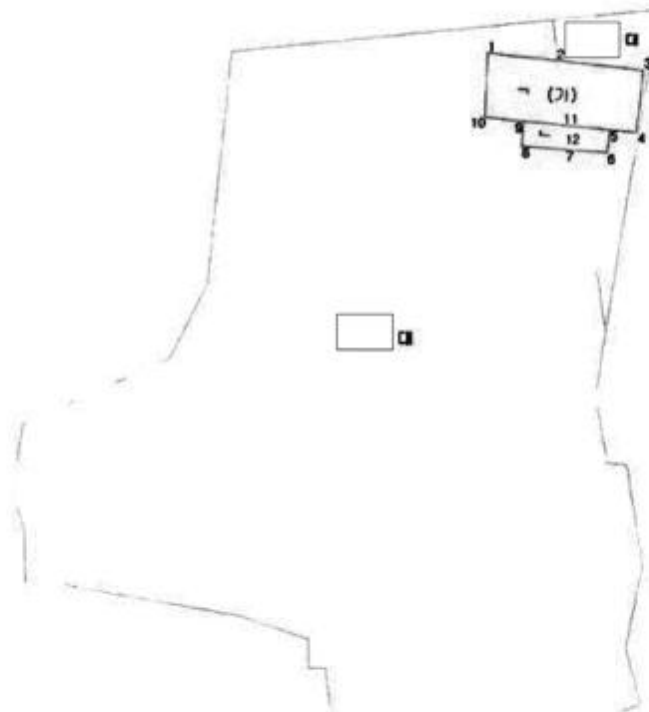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지원

별지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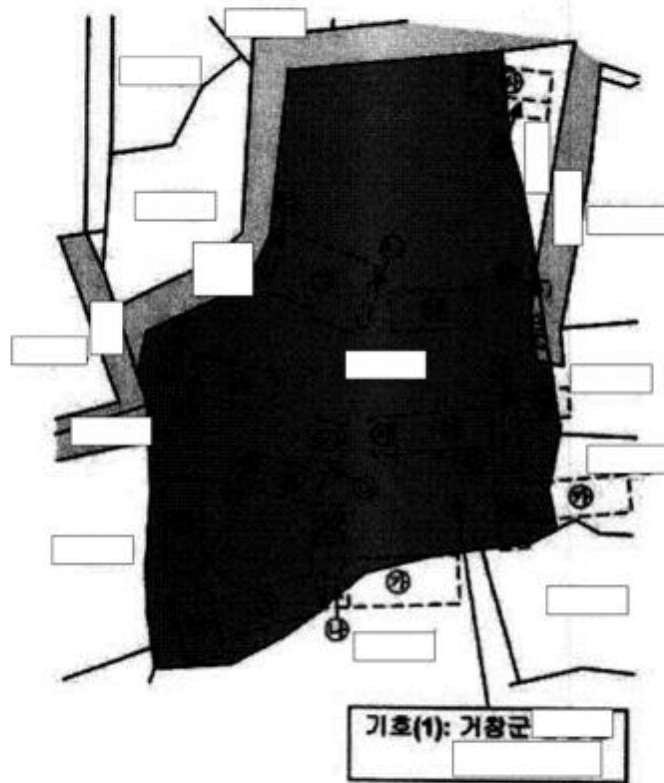
감 정 도

토지소재 : 거창군



2017

별지2



1) 원고는 2021. 7. 16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주문 제1의 가.항 및 제1의 나.항 기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들의 2020. 6. 1.자 준비서면 내용에 비추어, 피고 B을 상대로 주문 제1의 가.항, 피고 C을 상대로 주문 제1의 나.항 기재 각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택한다. 또한 원고가 2021. 7. 16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 B을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㉮, ㉰건물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2021. 8. 10.자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(가)부분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. 2021. 7. 16.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경남 거창군 D 대 1,488㎡는 경남 거창군 D 대 1,625㎡의 오기로 보인다.